

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 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 천 광 역 시

#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8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9. 9. .  
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## 1. 개정사유

가. 여성복지관에 여성창업 지원육성을 위한 「여성창업지원센터」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, 여성인력개발센터 직원에 대한 상근(겸직금지)규정은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삭제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여성복지관에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사업을 규정함  
(안 제7조제3호)

나. 여성문화회관과 여성인력개발센터 시설의 장 및 직원의 상근(겸직금지)으로 하는 내용을 삭제 함(안 제21조제2항)

다. 여성복지관의 여성창업지원센터 사용료를 규정함(안 별표 2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

#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호 중 “교육·취업지원과”를 “교육·취업지원, 여성창업지원 센터 운영,”으로 한다.

제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.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사업 : 유망 여성창업자를 집중 발굴·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성공률을 제고시키는 등 여성창업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

제19조제2항제1호 중 “모·부자 가정”을 “한부모가족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2항 중 “시설의 장 및 직원은 상근(겸직금지)으로 하고”를 “시설의 장과 직원에 관한”으로 한다.

별표 2 여성복지관 시설 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기준표에 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여성창업지원센터	창업지원실	1개월	50,000	- 보증금 100만원 별도 - 전기료 등 별도
	창업부스	1개월	20,000	- 보증금 50만원 별도 - 전기료 등 별도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여성 관련 시설의 구분) (생략)</p> <p>1. 여성복지관 :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<u>교육·취업지원과 저소득 여성</u>의 자활 능력지원, 여성과 아동의 상담·보호, 자원활동 지원 등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</p> <p>2.~4. (생략)</p>	<p>제4조(여성 관련 시설의 구분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            -- <u>교육·취업지원, 여성창업지원 센터 운영,</u>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</p> <p>2.~4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사업) 여성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 설&gt;</p>	<p>제7조(사업) -----            -----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사업 : 유망 여성창업자를 집중 발굴·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성공률을 제고시키는 등 여성창업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</u></p> <p>4.~7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9조(사용료 등의 감면) ①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수강료와 유아수탁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. 국민기초 생활수급권자와 저소득 모·부자 가정</p> <p>2. ~ 4. (생략)</p>	<p>제19조(사용료 등의 감면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</p> <p>1 -----</p> <p>-- <u>한부모가족</u>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21조(조직 구성) ①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<u>시설의 장 및 직원은 상근(겸직금지)으로 하고</u> 자격기준 및 소관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21조(조직 구성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시설의 장</u>  <u>과 직원에 관한</u> -----  -----  -----</p>

현		행		개 정 안				
[별표 2] 여성복지관 시설 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기준표 (단위:원)				[별표 2] 여성복지관 시설 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기준표 (단위:원)				
구 분	기 준	요 금	비 고	-----	----	---	----	
1. 시설사용료 가. 대강당 나. 회의실세미나실	1회(1시간)	30,000	- 매시간 초과시 마다기준요금의 20퍼센트를 가산 징수한다	1. ----- 가. ----- 나. -----	-----	-----	-----	
	1회(1시간)	15,000						
2. 냉·난방 가. 대강당 나. 회의실세미나실	1회(1시간)	20,000	- 매시간 초과시 마다기준요금의 50퍼센트를 가산 징수한다	2. ----- 가. ----- 나. -----	-----	-----	-----	
3. 유아수탁료 (교육생)	1개월	15,000		3. ----- -----	-----	-----		
4. 교육수강료	1개월 (과목당 1주 수강시간 1시간이상 3시간이하)	12,000	- 재료비는 수강생 부담	4. -----	-----	-----	-----	
	1개월 (과목당 1주 수강시간 4시간이상 7시간이하)	15,000						
	1개월 (과목당 1주 수강시간 8시간이상)	20,000						
<u>&lt;신 설&gt;</u>				5. 창업 지원센터	창업 지원실	1개월	50,000	- 보증금 100만원 별도 - 전기료 등 별도
					창업 부스	1개월	20,000	- 보증금 50만원 별도 - 전기료 등 별도

##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

관계법령	“해 당 없 음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 당 없 음”
관련자료	“해 당 없 음”